

# 경고: 투표 과정을 타락시키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!

위반 시 벌금 및/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.

## 금지되는 활동:

- 선거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*마십시오*.
- 어떤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또는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*마십시오*.
- 불법 투표를 하지 *마십시오*.
-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투표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돕지 *마십시오*.
-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;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사진을 찍거나; 투표소 출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지 *마십시오*.
- 어떤 사람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; 투표 과정을 지연시키거나; 어떤 사람에게 투표할 자격이 없다거나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으로 조언하지 *마십시오*.
-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*마십시오*.
-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,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주선하지 *마십시오*.
-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, 투표소 바로 근처에 치안관,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도록 주선하지 *마십시오*.
- 투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지 *마십시오*.
- 선거 결과를 위조, 모조 또는 변조하지 *마십시오*.
-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*마십시오*.
- 투표 목록, 공식 투표지 또는 투표지 용기를 변조, 파괴 또는 변경하지 *마십시오*.
- 유권자가 공식 수거함이라고 믿도록 속일 수 있는 투표지 수거 용기를 전시하지 *마십시오*.
- 투표 결과 사본을 변조 또는 조작하지 *마십시오*.
-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나 노인에게 그들의 의도에 반하여 후보자 또는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지 *마십시오*.
- 선거관리원이 아니면서 선거관리원으로 행동하지 *마십시오*.

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지를 직장에 가지고 오도록 의무화 또는 요구하거나 직장에서 투표지에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. 급여 또는 급료를 지급할 때,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.

투표구 관리원은 유권자가 투표지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거나,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우,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위에 요약된 투표 절차의 타락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